

『금융소비자보호규정』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신설>	<p><u>제11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외 기타사항</u></p>	
<신설>	<p><u>제20조(중도상환해약금률의 산정 및 부과)</u></p> <p>① 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률의 산정·부과시 다음 각 호의 비용 이내에서 산정·부과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, 해지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·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: 대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조달 및 운용 손실</p> <p>2. 미회수 행정비용: 인지세, 감정평가수수료, 임대차조사 수수료, 담보권설정비, 기타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3. 미회수 모집비용: 대출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(대출 모집인, 대출모집플랫폼, 공인중개사에 지출한 수수료 등)</p> <p>② 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률 산정·부과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률의 급격한 변동 방지</p> <p>2. 중도상환해약금률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</p> <p>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출상품의 특성을</p>	<p>- 은행연합회의 「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」 개정사항 반영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구분하여 중도상환해약금률을 산정·부과하여야 하며, 산정된 요율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</u></p> <p><u>2.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(담보대출은 '부동산 및 동산', '보증서 및 기타'로 구분)</u></p> <p><u>3.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</u></p> <p><u>④ 은행은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 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해약금률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은행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중도상환해약금률의 산정·부과 기준을 여신부서 담당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4>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[2]월 [3]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